서울특별시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고

1. 회부경위

1. 의안번호 : 제491호

2. 제 안 자 : 이민옥 의원 외 33명

3. 제안일자 : 2023년 01월 27일

4. 회부일자 : 2023년 02월 06일

2. 제안이유

- 서울시는 현재 출자・출연 기관을 설립 및 운영하는 경우에만 사전에 그 타당성을 검토하거나 검토 결과 공개, 지역 주민 의견 수렴 등 현행 법령에서 포함하고 있는 절차를 그대로 따르고 있음.
- 그러나 설립 및 운영 뿐만 아니라 통폐합하는 경우에도 갈등과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는 바,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 역시 날로 높아지고 있는 실정임.
- 특히 지방정부의 장이 교체되는 경우, 출자·출연 기관 등의 통폐합을 추진함에 있어 평상시보다 더 큰 갈등과 문제점이 발생하고 사회적

비용 또한 높아질 수 밖에 없는 구조임.

 이에 따라 출자・출연 기관의 통폐합 시에도 타당성 검토 및 결과의 공개, 주민 의견 수렴 등 설립에 준하는 절차와 과정을 이행하도록 조례에 명시적으로 규정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 출자・출연 기관의 통폐합 시, 타당성 검토 및 결과의 공개와 검토 결과에 대한 시민 의견 수렴 등 설립 시 거쳐야 하는 필수 절차들을 이행하도록 관련 조항을 신설함.

4. 검토의견 (수석전문위원 강상원)

가. 개정안의 개요

○ 개정안은 출자・출연 기관 통폐합 시 나타나는 갈등과 문제점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높아짐에 따라, 통폐합 시에도 설립에 준하는 타당성 검토와 결과의 공개, 주민의견 수렴 등의 절차를 마련하고자 발의됨.

나. 출자・출연 기관 운영현황과 최근 동향

○ 서울특별시(이하 "서울시")는 「지방자치단체의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

관한 법률」(이하 "지방출자출연법")에 근거해 현재 20개 출자·출연 기관을 설립·운영 중임(참고자료).

○ 그러나 지난 10년간 출자·출연 기관의 수와 정원, 지원 예산 등이 급증하면서 기능중복과 방만하고 비효율적인 운영 문제가 제기됨.

< 최근 10년간 서울시 출자·출연 기관 현황 >

구분	2013년	2016년	2019년	2023년
출자·출연 기관	11곳	14곳	19곳	20곳
정원	2,617명	3,113명	5,444명	6,608명
전체 예산 규모	6,916억원	7,371억원	1조 112억원	1조 5,611억원
서울시 출연금	1,755억원	2,334억원	3,892억원	5,259억

- 이에 서울시는 성과저조 기관¹⁾ 등에 대한 조직혁신 추진방안을 수립 (2022.7.)하고, 업무와 기능이 유사·중복되는 4개²⁾기관을 2개 기관으로 통합하고 2개³⁾ 기관의 통합 여부는 6월에 재판단하기로 함⁴⁾.
 - 향후 통폐합 대상 기관들에 대한 세부 통합설계안을 마련(2023.4.)하고, 조례 정비(2023.6.) 후 법적 해산절차를 이행(2023.11.)할 예정임.

¹⁾ 서울시 20개 출연기관 중 설립후 3년이 경과된 기관, 최근 3년 이내 '라'등급 또는 '다'등급 2회 이상 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, 시립교향악단, 세종문화회관, 디자인재단, 평생교육진흥원, 50플러스재단, 디지털재단, 120다산콜재단, 공공보건의료재단, 기술연구원으로 총 9개 기관임.

²⁾ 기술연구원·서울연구원, 공공보건의료재단·서울의료원

^{3) 50}플러스재단, 평생교육진흥원

⁴⁾ 서울특별시 출자·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(2022.12.23)

○ 한편, 행정안전부는 「새정부 지방공공기관 혁신 지침」(2022.9)을 통해 지방 출자・출연 기관을 포함한 지방공공기관에 대한 기관 통폐합 등의 기능 조정 기준을 마려하는 등 5개 분야의 혁신 방향을 제시함.

< 지방공공기관 혁신 지침 >

유형	기능 조정 기준
	① 동일 사업분야에 유사 지방공공기관이 존재하여,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인 경우 통합 추진
기관	② 소규모 인력(예: 10인 이하)으로 운영되는 기관의 경우,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인 경우 유사기관과 통합 추진
통·폐합	③ 설립목적을 달성하였거나 향후 존속 시에도 연속적이고 안정적인 사업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폐지
	④ 외연확장 수단, 과다 인력해소, 일시적 사업추진으로 설립된 자회사 및 관련 법인의 통합 또는 폐지
	① 지방공공기관 간 일부 기능이 중복되어 통합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기능조정
기능 조정	② 지방공공기관 내 일부 기능이 중복되어 통합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기능조정
	③ 고유 목적사업 외 직접 수행이 불필요한 비핵심 기능, 디지털 전환 등 정책환경 변화에 따른 수요감소 기능의 경우 폐지 또는 축소
협업	○ 타 지자체 지방공공기관과 공동설립, 계약 등을 통한 협업 추진

○ 이에 따르면, 지방자치단체별 자체 진단을 통해 지방자치단체 내 기관은 유사・중복 통폐합, 기관 간 또는 기관 내 유사・중복 기능은 축소 또는 폐지, 지방자치단체 간 유사기관(기능)은 협업하도록 기능을 조정하게 됨.

< 지방공공기관 유사·중복 기능 조정 계획 절차 >

기준 마련	기관(기능)진단 및 조정계획 수립	보고	조정 추진
행안부	지자체	행안부	지자체
	지방공공기관	(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)	지방공공기관

다. 통폐합 등의 절차 과정 신설 (안 제5조의2)

- 안 제5조의2는 출자・출연 기관 통폐합 시 통폐합에 대한 타당성 검토와 검토 결과 공개, 시민 의견수렴 등 출자・출연 기관 설립에 준하는 절차5)를 이행하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함.
- 현행 지방출자출연법에서는 통폐합 관련 규정이 미비되어 있고,
 통폐합으로 해산하게 되는 경우 각 기관의 정관을 따르도록 함⁶⁾.
- 개정안은 출자・출연 기관 통폐합 시 설립에 준하는 절차들을 이행하도록 하여 정치적 필요에 따른 출자・출연 기관의 작위적인 통폐합을

12. 해산에 관한 사항

⁵⁾ 제7조(출자·출연 기관의 설립·운영의 타당성 검토와 설립 전 협의 등) ① 지방자치단체는 출자·출연 기관(제2항제2호에 따라 협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출자·출연 기관을 포함한다)을 설립 하려는 경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금액 이상을 추가로 출자하거나 전년보다 증액하여 출연 하려는 경우에는 출자·출연 기관의 설립·운영의 타당성 등에 대하여 검토한 후 심의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거쳐야 한다.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.

^{1.} 지방자치단체의 투자 및 사업의 적정성

^{2.} 주민복리에 미치는 효과

^{3.} 그 밖에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

② 지방자치단체가 출자·출연 기관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절차를 거친 후 제4조제 3항에 따른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시·도지사는 행정안전부장관과,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관할 시·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협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^{1.} 다른 법률(「민법」 및 「공익법인의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 」은 제외한다)에 출자·출연 기관의 설립 승인과 협의 등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

^{2.} 그 밖에 출자하거나 출연하는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기관을 설립하려는 경우 ③ 지방자치단체는 출자·출연 기관을 설립하려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출자·출연 기관의 설립 타당성 등에 대한 검토를 전문 인력 및 조사·연구 능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여야 한다.

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출자·출연 기관의 설립·운영의 타당성 등 검토 및 공개와 설립 전협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⁶⁾ 제8조(정관) ① 출자·출연 기관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. 다만, 출자·출연 기관의 형태와 특성이나 업무 내용상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② 출자·출연 기관은 제5조에 따라 출자·출연 기관으로 지정된 후 3개월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정관을 작성하여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. 정관의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.

방지하고 사회적 갈등을 완화할 수 있는 입법효과가 있음.

- 다만, 출자·출연 기관의 남설을 방지하기 위한 타당성 검토 등의설립 절차를 통폐합에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과도한 입법규제로볼 수 있고 실효성 여부도 불명확한 측면이 있음.
- 또한, 개정안 부칙에서는 조례의 시행일을 공포시로 하고, 공포 이후 통폐합하려는 경우부터 적용하고 있음(안 제2조).
- 그러나 개정안에서는 타당성 검토 등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규칙에 위임하고 있어(안 제5조의2제5항), 규칙에서 구체적인 통폐합 절차를 규정하지 않으면 적용시점에 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.
 - 규칙 제정 이전에 출자·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에서 통폐합이 결정되어 이미 상당 부분 진척된 경우에는 개정안의 통폐합 절차 적용에 혼선을 야기할 수 있음.
- 따라서 부칙의 시행일을 수정하거나 이미 통폐합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 대한 경과규정을 신설하는 등 적용대상과 시점의 불명확 성을 해소할 필요가 있음.
- 한편, 개정안과 유사한 내용의 「지방출자출연법 일부개정법률안」 (천준호 의원 대표발의, 2022.11.24.)이 국회에 발의되어 현재 해당 상임

위원회에 계류 중임.

담당 조사관	연락처		
김용우	02-2180-8062		

[참고자료] 서울시 출자·출연기관 현황

(2023.01.31일 현재)

	(2020,01,01)					
Ŧ	그 분	의 료 원	연 구 원	산 업 진 흥 원	신 용 보 증 재 단	세 종 문 화 회 관
설	립목적	- 진료와 의학연구를 통해 시민의 보건 향상을 도모하고 공공의료의 질향상과 보건의료사업 발전에 기여	- 시정 관련 각종 정책 과제에 대한 종합작체계적·전문적 조사·연구	- 서울시 신업진흥 및 중소기업에 대한 종합적· 체계적 지원 사업을 통한 중소 기업의 경영여건 개선 및 경쟁력 강화	- 중소기업·소기업 및 소상공인 등의 채무를 보증하여 자금융통을 원활히 하고 경제 활성화에 기여	- 문화 예술 진흥을 위한 각종 사업 수행
설	립근거	-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- 서울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	- 지자체출연 연구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- 지방자치단체 출자-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- 연구원 운영 및 지원조례	-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- 지방자치단체 출자-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- 재단설립조례	- 지역신용보증재단법 - 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언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-재단설립조례	- 민법32조 - 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- 재단설립조례
설	립 일	`82. 9. 30.	`92. 7. 14.	`98. 3. 31.	`99. 6. 7.	`99. 7. 1.
대 (표 자 임기)	송관영(63년생) (´20. 6. 1.~´23. 5. 31)	박형수(67년생) ('22. 3.10.~'25. 3. 9.)	김현우(65년생) (´21.11. 2.~´24.11. 1.)	주철수(60년생) ('21.12.1.~'24.11.30.)	안호상(59년생) (′21.10. 1.~′24.09.30,)
조	5 직	6부 4실 1본부, 7센터 25진료과 28팀, 1연구소, 2위원회	감사실, 1본부, 1단, 3실, 4센터	3실 8본부 1단 1센터 40팀	2부문 2실 6부 3센터 / 4지역본부 25지점 6센터	3본부 1실 15팀 9예술단 (1TF)
정	정원	1,953명	234명	518명(임원3 포함)	488명(임원3 포함)	526명
정 원 내	현원	1,689명	221명	510명	479명(임원2 포함)	426명
저	무기	-	1명	-	-	-
정 원 외	기간제	111명	54명	25명	161명	30명
외	단시간	10명	l명	5명	-	-
01	정원	13명	15명	15명	8명	15명
사	현원	10명	11명	12명	8명	13명
감 사	정원	1명	2명	2명	l명	2명
사	현원	1명	1명	2명	l명	2명
′23 ଖ	당초 예산	2,333억원	391억원	2,350억원	5,123억원	615억원
산	예산 현액	2,444억원	391억원	2,490억원	5,175억원	615억원
	~ '22 (누적액)	2,461억원	4,104억원	6,187억원	6,846억원	5,695억원
명기대	′23	919억원	316억원	565억원	168억원	413억원
	주요 사업	-진료사업 -공공보건의료시업 -의료인,의료기사 및 지역 주민의 보건교육사업 -의료지식과 치료기술의 보급 등에 관한 사항 -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공보건 의료시책의 수행 -감염병에 관한 각종 사업 지원 그밖에 보건복지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보건 의료시업	원가계산 등의 수탁 -연구관련 도서 및 간행물	위한 기업인재 양성 및 고용지원 - R&D지원 및 지식재산권 확보 등 기업 기술 경쟁력 강화 - 서욱시 주요거절벽	-신용보증지원 -구상채권관리 -기본재산관리 -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-소상공인 종합지원 -글로벌 바이오메디컬 신성 장동력투자펀드 관리	-세종문화회관 운영 -공연 예술진흥 및 작품전시 활동 · 보급 -문화예술 관계 자료수집· 관리, 보급 및 조사연구 -문화예술의 국내외 교류사업 -문화예술교육사업 -법인의 운영보존 자금의 적립사업 -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서울시 위탁사업 -기타 문화시설운영과 문화 행사 등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및 부대 사업

구	분	여 성 가 족 재 단	복 지 재 단	문 화 재 단	시립교향악단	디 자 인 재 단
설립목적		-실질적 남녀평등 실현, 서울여성의 경쟁력 항상과 사회참여 및 복지증진, 아동의 권리 보장, 기족 다양성 지원 및 보육 공 공성 강화	-시민의 다양한 복지수요 에 부응하고 복지서비스 의 전문성을 증진하여 시민 에게 내실있는 사회 복 지 서비스 제공	-서울의 문화예술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문화예 술진흥과 시민의 문화예 술 활동지원	-시민 문화에술 항유기회 확대 및 문화도시로서의 역량 강화	-디자인산업 육성 및 디자인문화 확산
설립근거		-민법32조 -지방자치단체 출자-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-재단설립조례	-민법32조 -지방자치단체 출자-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-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	-민법32조 -지방자치단체 출자-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-재단설립조례 -지역문화진흥법 제19조 (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 화예술위원회의 설립 등)	-민법32조 -지방자치단체 출자-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-재단설립조례	-민법32조 -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-서울디자인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
설립	립 일	′02. 1. 24.	′03. 12. 31.	′04. 3. 15.	′05. 6. 1.	′08. 12. 16.
гиз	표 자	정연정(68년생)	김상철(64년생)	이창기(59년생)	손은경(69년생)	이경돈(58년생)
(임	기)	('21.8.23.~'24.8.22.)	('21.11. 4.~'24.11.3.)	('21.10.18.~'24.10.17 .)	('21.10.1.~'24. 9. 30.)	('21.10.1.~'24.9.30)
조	직	2본부, 7실	1전략관·2실, 2본부·1실, 3센터·1지원단	3본부 9실 25팀 8단위조직	1본부 5팀 1감사역 1교향악단	1관 3본부 5실
정 원 내	정원	171명	187명	232명	164명	160명
내	현원	159명	185명	229명	134명	151명
정	무기	-	-	-	-	-
정원외	기간제	25명	33명	30명	- 명	6명
-1	단시간	0명	-	-	-	-
0	정원	21명	10명	15명	15명	15명
사	현원	13명	9명	14명	14명	11명
감 사	정원	2명	2명	2명	1명	2명
사	현원	2명	1명	1명	1명	2명
′23 ଖ୍	당초 예산	309억원	810억원	656억	227억원	533억원
산	예산 현액	309억원	810억원	865억	227억원	533억원
市출연금	~ '22 (누적액)	1,409억원	4,696억원	4,907억원	2,169억원	3,123억원
검금	′23	165억원	759억원	568억원	154억원	296억원
주요사업		- 여성이동가조사연구 - 연성이동가조차및 인증 - 여성이동가조차및 인증 - 여성이동가조막 보유 분야의 동가족및 보유 분야의 도가 목 및 보유 분야의 도 등 보유 - 역성이 등 가족 및 보유 기존 및 보급 - 역성이 등 기존 및 목 기존 및 사이의 등 이원 필요한 기존 기존 및 무 기존 및 및 무 기존 및 무 기 은 기 은 기 은 기 은 기 은 기 은 기 은 기 은 기 은 기 은	그램 개발 모급 - 사회서비스 품질관리 - 지역복지 활성화 지원 - 국내외 복지 분야 연계· 교류 및 민간과의 협력 - 저소득 취약계층 권리보호, 공익·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한 법률 금융복지서비스 지원	문화예술활동의 지원 - 문화예술의 교육 및 연구 - 국내외 문화예술 교류 - 시민의 문화항수 및 창의력 증진 - 지역문화의 육성 지원 및 지역문화 전문인력 양성 - 기타 재단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	- 공익목적 공연 - 해외공연 - 판매공연 (정기공연, 기업공연 등) - 문화예술 교육사업 - 음반 녹음, 발매	- DDP 운영 - 디자인산업 경쟁력 강화 - 디자인공공성강화 - 디자인문화확산 - 새활용플라자운영

		_, _, _, _,				
구	분	장 학 재 단	평생교육진흥원	50플러스재단	디 지 털 재 단	120다산콜재단
설립목적		-우수인재의 발굴·양성과 경제적 이유로 교육을 받기 곤란한 학생과 청소년을 지원	-평생교육 관련 업무의 효율적 수행으로 시민의 평생교육 활성화에 기여	-장년층의 은퇴전후 새로운 인생준비 및 성공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사회참여활동 지원	-첨단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시민 복리 증진하고, 서울 특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원	-시민중심 맞춤형 행정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정전문상담기관으로 시민중심의 소통행정 실현
설립근거		-민법32조 -공익법인설립 운영에 관한법률 -지방자치단체 출자-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-재단설립조례	-평생교육법20조 -지방자치단체 출자-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-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 제17조	-민법32조 -지방자치단체 출자-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-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	-민법32조 -지방자치단체 출자-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-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디지털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	-민법32조 -지방자치단체 출자-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-서울특별시 120다산콜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폐
설	립 일	′09. 1. 8.	′15. 3. 12.	´16. 4. 28.	′16. 5. 25.	′17. 4. 24.
대	표 자	이회승(67년생, 이사장 직무대행)	이회승(67년생, 원장 직무대행)	이회승(67년생, 대표이사 직무대행)	강요식(61년생)	이이재(59년생)
(임기)		(*23. 1. 1. ~ 신임이사장 선임시까지)	('22. 8. 19.~ 신임 원장 임명시까지)	('22. 8. 19.~ 신임대표이사 임명시까지)	(21. 9. 13.~ '24. 9. 12.)	('21. 8. 2. ~ '24. 8. 1.)
조	직	1사무국 2부	2국 9팀 1센터	2본부 1실	1실 1 본부 7팀	1실 2본부 14팀
정 원 내	정원	13명	77명	127명	45명	423명
내	현원	11명	72명	122명	39명	416명
 정	무기	-	-	8명	-	11명
정 원 외	기간제	-	4명	12명	2명	-
	단시간	-	-	-	-	-
οļ	정원	11명	11명	10명	8명	10명
사	현원	10명	5명	5명	6명	6명
감 사	정원	2명	2명	2명	2명	1명
사	현원	2명	1명	2명	2명	1명
′23 ଖ	당초 예산	106억원	102억원	187억원	88억원	286억원
산	예산 현액	106억원	102억원	187억원	88억원	286억원
市출연금	~ '22 (누적액)	1,610억원	490억원	931억원	502억원	1,320억원
음	′23	98억원	95억원	176억원	78원	267억원
주요사업		-대학생 장학사업 (대학분야, 진로활동, 공익 인재, 평화희망, 직업전문 학교, 우수인재, 독립유공 자후손) -고등학생 장학사업 (고교진로, 예체능, 하나고, 서울꿈길,) -장학생 성장지원사업 (멘토링, 리더 육성, 아카 테미, 커뮤니티 프로그램 등)	 평생교육 진흥 프로그램 개발 운영 및 지원 서울시 평생학습 활성화 지원 서울시 문해교육 활성화 함께 배우고 소통하는 모두의학교 운영 	 장선층 일모델 개발 및 확산 장선층 관련 정책 연구개발 및 실태조사 장순층 관련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장선층 관련 시설 지원 및 종사자 교육 장선층 사업 관련 민관 	 공공대》터 활용 분석 지원 디지털 약자 역량강화 교육 로봇활용 디지털(#비스 지원 서울 스마트시타센터 운영 스마트도시 솔루션 해외진출 메타버스 서울 시민참여 지원 	-상담 전문인력 앙성 -시민중심 맞춤형 상담서비스 발굴 -시정상담 서비스의 효과적

7	분	공 공 보 건 의 료 재 단	기 술 연 구 원	관 광 재 단	사회서비스원	미 디 어 재 단 T B S
설	립목적	-서울시 보건의료 기관 운영 효율화, 질향상 지속 강화 -서울시 보건의료 기관·자원·분야간 연계협력 강화	-시정 관련 각종 기술, 정책과제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조사연구를 통한 서울시 지속가능 발전 도모	-국내외 관광환경 변화에 선체적으로 대응하고 관광 전담기구로서 공익적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며 관광산업을 지원하고 업계와 협력하면서 서울 관광의 지속성장을 견인	-사회서비스의 공공성, 전문성 및 투명성을 높이고, 그 질을 항상시킴으로써 시민의 다양한 사회서비스 수요에 부응	-미디어를 통한 시민의 동등한 정보 접근의 보장, 시민의 시정참여 확대, 문화예술 진흥
설립근거		-민법32조 -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-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	-민법32조 -지방자치단체 출자-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-서울특별시 서울기술연구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	-민법32조 -지방자치단체 출자-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-서울특별시 서울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	-민법32조 -지방자치단체 출자-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-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 -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 서비스원 설립· 우영에 관한 법률	-방송법 -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-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(tbs)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
설	립 일	´17. 7. 6.	´18. 3. 27.	´18. 4. 23.	´19. 2. 28.	´20. 2. 17.
		박유미(66년생, 대표이사 직무대행)	임성은(72년생)	길기연(60년생)	황정일(63년생)	정태익(65년생)
[CH	표 자 임기)	('22. 11. 8.~ 신임대표이사 임명시까지)	('22.4.21~.'25.4.20.)	(21.7.26. ~'24.7.25.)	(21. 10. 28.~24.10.27.)	(23. 2. 6.~26.2.5)
조	직	4 본부 1실	1본부 7실	2본부 14팀 1TF	3실 8팀	2실 5본부 29팀
정	정원	53명	108명	159명	572명	398명
정 원 내	현원	49명	95명	145명	445명	352명
정원외	무기 기간제 단시간	1명 5명 -	- 15명 -	- 25명 -	- 54명 -	- 19명 2명
οļ	정원	10명	10명	15명	10명	11명
사	현원	9명 	7명	8명	9명 	10명
감 사	정원	2명 2명	2명 2명	2명	2명 2명	1명
	현원 당초	2명	2명	1명	2명	1명
´23 예	예산	65억원	184억원	619억원	321억원	320억원
산	예산 현액	65억원	184억원	619억원	321억원	320억원
市출연금	~ '22 (누적액)	192억원	668억원	2,010억원	603억원	998억원
금	′23	52억원	116억원	581억원	689억원	232억원
주요사업		- 싱크탱크로서 정책연구 및 평가 - 서울 공공보건의료 경쟁력 강화 및 브랜드화 - 예방중심 공공보건의료 구현, 지역사회 건강생태계 조성 - 예방중심 공공보건의료 구현, 지역사회 건강생태계 조성 - 보건의료 자원개발 및 거버넌스 플랫폼 구축	- 재난 예방 및 대응에 관한 조사 · 기술개발 및 연구 - 도시기반시설 건설 및 유 기관리 에 관한 조사 · 기술개발 및 연구 - 물순환 및 하찬만리에 관한 조사 · 기술개발 및 연구 - 시민생활환경 개선에 관한 조사 · 기술개발 및 연구 - 스마트도시 조성 · 관리에 관한 구 - 스마트도시 조성 · 관리에 관한 구 -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사 · 기술개발 및 연구 -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사 · 기술개발 및 연구 -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사 · 기술개발 및 연구 -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사 · 기술개발 및 연구 - 국내외 선진 우주기술 발 굴 대외 자원	등 관광콘텐츠 확충 - 국내·외 관광홍보 및 마	-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의 수탁운영 - 사회석비스 관련 법령에 따른 각종 서비스 및 설치 및 설치 및 설리 설립 설리 설리 설리 설리 전비스 자연하는 지역 보이 유한 지역 기사 하는 지역 기사	- 방송을 통한 교통 및 생활정보 제공 등 방송사항 전반 - 지역 관련 광보 제공 및 문화예술 관련 방송 - 주한 외국인과 국내 방문 외국인을 위한 정보의 제 공과 소통 활성화를 위한 방송시업 - 시민의 동등한 미디어 참 여와 소통 활성화 지원 사업 - 해외방송과의 국제교류 협력 - 재단의 사업 재원 마련을 위한 광고 협찬 등 수익 사업 - 그 밖의 범인의 목적 성에 필요한 사업